

南宋 高宗時代의 鎭 研究

金 容 完*

目 次

- I. 序 論
- II. 鎭의 設置背景
- III. 鎭의 設置實態
- IV. 諸 鎭의 消滅
- V. 鎭撫使의 權限과 屬官
- VI. 結 論

I. 序 論

陳橋驛의 군사정변을 통해 帝位에 오른 宋 太祖 趙匡胤은 卽位한 후 樞密直學士 趙普의 말에 따라¹⁾ 지방세력이 출현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唐末과 五代 때의 정국혼란의 온상 이던 諸 節度使를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그가 관할하던 지역에는 文官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지방 군사력에 대한 중앙 군사력의 절대 우위를 기하기 위해 전국의 精兵을 뽑아 禁軍에 배속시키고²⁾ 統兵官과 兵이 밀착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京師와 그 주변지역에 주둔시킨 兵士들을 1년 내지 2년을 주기로 교대케 하고서³⁾ 교대할 때에는 帥와 兵이 함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⁴⁾ 또한 한 사람의 지방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서 지방의 최고 행정구역인 路에 그것을 총괄하는 장관을 두지 않고 安撫使·轉運使·提點

* 人文大學 史學科 (Dept. of History, Cheju Univ., Chejo-do, 690-756, Korea)

- 1) 「續資治通鑑長編」 卷2 建隆2年7月戊辰條：初，上既誅李筠及重進，一日，召趙普問曰：「天下自唐季以來數十年間帝王凡易八姓，戰鬪不息，生民塗地，其故何也？吾欲息天下之兵，爲國家長久計，其道何如？」普曰：「陛下之言及此，天地人神之福也，此非他故，方鎮太重，君弱臣強而已。今所以治之亦無他奇巧，惟稍奪其權，制其錢穀，收其精兵，則天下自安矣。」語未畢，上曰：「卿無復言，吾已喻矣。」
- 2) 方豪，「宋代之軍隊」，民主評論(香港 民主評論社)，1期，1949年6月，P. 1.
- 3) 羅球慶，「北宋兵制研究」，新亞學報(香港 新亞書院研究所)，3期1卷，1957年8月，P. 180.
- 4) 方豪，上揭論文，P. 1.

刑獄使·提舉常平茶鹽使를 두어 각기 軍政·財政·司法·常平·專賣를 분담토록 하고, 路 아래의 행정구역인 府·州·軍·監에도 知府·知州·知軍·知監의 아래에 通判을 두어 그를 감시케 하였다.⁵⁾

宋太祖가 이와 같은 일련의 조처들을 취하였던 것은 唐末期와 五代 때의 잦은 정국 혼란이 지방세력이 너무 강대한 데에서 연유한다고 여겨 증앙은 강하게 하고 지방은 약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정책이 強幹弱枝의 정책으로 불리우는 연유는 여기에 있다.

권력을 증앙으로 집중시키려는 그의 이러한 強幹弱枝의 정책은 宋의 國策이 되어⁶⁾ 北宋과 南宋 양대에 걸쳐 철저히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南宋時代에도 과연 통설처럼 強幹弱枝의 中央集權政策이 철저히 시행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후술하겠지만 唐과 五代 때 증앙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원흉인 藩鎮과 다를 바 없는 鎮이 南宋의 高宗時代 때 변경지역에 설치되었었고, 寧宗·度宗·理宗時代 때에도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⁷⁾ 바, 鎮의 설치는 中央集權政策과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범위를 축소하여 高宗時代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南宋 朝廷에서 鎮을 設置한 背景, 鎮의 設置實態, 鎮의 消滅, 鎮撫使의 權限과 屬官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鎮의 設置背景

南宋의 高宗은 建炎 4年(1130) 5月, 范宗尹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경지역에 諸 鎮을 설치하였다. 그것은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다.

建炎元年(1127) 5月 1日, 徽宗의 아홉번째 아들인 康王 趙構(南宋 高宗)가 元祐太后的 명을 받고 南京에서 즉위함으로써⁸⁾ 金에게 멸망되었던 宋朝는 재건되었다. 그러나 宋의 영토를 宋의 皇族이 아닌 자로 통치케 하고 그들은 그를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미 大楚國을 세우고서 張邦昌을 皇帝로 옹립한 바 있었던⁹⁾ 金이 高宗을 옹정한 후 張邦昌과 같은 인물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하에¹⁰⁾ 高宗이 즉위하던 해 12월부터 또 다시 군을 대거 남진시켜 南宋의 여러 지역(表

5) 『宋史』 卷 167 志120 職官7.

6) 蔣復璁, “宋代一個國策的檢討”, 大陸雜誌(臺北 大陸雜誌社), 9卷7期, 1954年10月, PP. 21~23.

7) 寧宗·度宗·理宗時代에 鎮이 설치되었던 사실은 다음의 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宋史』 卷40 本紀40 寧宗4 嘉定15年12月丁亥條: 以李全爲保寧軍節度使·右金吾衛上將軍·京東路鎮撫副使.

◎ 『玉海』 卷132 官制 使 建炎鎮撫使條: (寧宗)嘉定十五年十二月, 賈涉爲京東·河北鎮撫節制大使.

◎ 『宋史』 卷46 本紀46 度宗 咸淳10年4月戊午條: 以呂文福爲常德·辰·沅·澧·靖五郡鎮撫使, 知沅州.

◎ 『宋史』 卷90 志43 地理6 廣南西路條: 摛州, …… (理宗)寶祐元年, 兼摛·宜·欽·融鎮撫使.

8) 『建炎以來繫年要錄(以下 要錄으로 簡稱)』 卷5 建炎元年5月庚戌朔條.

9) 『宋史』 卷24 本紀24 高宗1 建炎元年3月丁酉條, 「要錄」 卷3 建炎元年3月丁酉條.

1) 참조)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그 전도는 별로 밝지 못했다. 高宗 자신이 공개적으로 「且戰且避」 혹은 「彼入我出, 彼出我入」의 정책을 펴면서¹¹⁾ 金軍의 추격을 피해 建炎元年(1127) 10월부터 同 4年(1130) 4월까지 兗州·楚州·揚州·鎮江府·潤州·常州·平江府·秀州·杭州·江寧府·建康府·越州·明州·臺州·溫州 등의 지역을 전전하였던(〈高宗의 避敵 日誌〉 참조) 사실이라던가, 金軍 진영에 사신을 12번씩이나 보내¹²⁾ 和約을 구걸하면서 建炎3年(1129) 5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皇帝의 尊號를 버리고 金의 正朔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던¹³⁾ 사실이 그것을 대변해 준다.

〈表 1〉 金軍의 蹂躪 地域

時 期	軍 別	蹂 躪 地 域
1次 侵入時 (1127. 12~ 1128. 5)	東路軍	棣州(河北東路)·滑州·鄭州(以上 京西北路)·濰州·青州(以上 京東東路)
	中路軍	河南府·西京·鄭州·滑州·汝州·潁昌府·蔡州·淮寧府(以上 京西北路)·東京(京畿路)·鄆州·均州·房州·唐州(以上 京西南路)
	西路軍	河中府·同州·華州·京兆府·延安府·陝州·華州(以上 永興軍路), 隴州·秦州·鳳翔府(以上 秦鳳路), 洺州(河北西路), 絳州(河東路)
2次 侵入時 (1128. 9~ 1129. 3)	東路軍	澶州·大名府·開德府·德州(以上 河北東路)·慶源府·相州(以上 河北西路)·濮州·襲慶府·徐州(以上 京東西路)·淄州·東平府(以上 京東西路)·濟南府·青州·濰州·淮陽軍(以上 京東東路)·泗州·楚州·揚州·眞州·泰州·高郵軍(以上 淮南東路)·江寧府(江南東路)
	西路軍	解州·陝州·延安府·虢州·華州·鄭州(以上 永興軍路)·晉寧軍·絳州(以上 河東路)
3次 侵入時 (1129. 7~ 1130. 5)	東路軍	濰州·萊州·密州·登州·沂州(以上 京東東路)·楚州·揚州(以上 淮南東路)
	中路軍	單州·興仁府(以上 京東西路)·汝州(京西北路)·南京(京畿路)·壽春府·廬州·和州·無爲軍·六安軍·濠州·光州·黃州(以上 淮南西路)·眞州(淮南東路)·潭州(荊湖南路)·臨安府·越州·明州·秀州·平江府·常州·鎮江府(以上 兩浙路)·建康府·廣德軍·太平州(以上 江南東路)·興國軍·洪州·撫州·袁州·吉州·建昌軍(以上 江南西路)
	西路軍	滑州(京西北路)·京兆府·陝州(以上 永興軍路)·汾州(河東路)

(〈表 1〉은 「宋史」(卷24·25·26)와 「要錄」(卷11~33)에 의거해 작성된 것임)

- 10) 「金史」卷74 列傳12 宗翰條: 太宗下詔伐康王. ……上曰. 「康王(趙)構當窮其所往而追之, 俟平宋, 當立藩輔如張邦昌者.」
- 11) 趙儷生, “靖康·建炎間各種民間武裝勢力性質的分析”, 寄隴居論文集(山東 齊魯書社), 1981年7月, P. 354.
- 12) 遲景德, “宋高宗與金講和始末”, 歷史學報(臺灣 國立政治大), 1期, 1983年3月, PP. 82~83.
- 13) 「要錄」卷23 建炎3年5月乙酉條: 上(高宗)遣左副元帥宗維書, 願去尊號用正朔.

〈高宗의 避敵 日誌〉

南京 → 兗州泗水縣(建炎元年10月庚午) → 楚州寶應縣(己卯) → 揚州(癸未) → 鎮江府(建炎3年2月壬子) → 潤州宮城鎮(癸丑) → 常州(甲寅) → 常州無錫縣(乙卯) → 平江府(丙辰) → 平江府吳江縣(戊午) → 秀州(己未) → 秀州崇德縣(庚申) → 杭州臨平鎮(辛酉) → 杭州(壬戌) → 常州(5月戊寅朔) → 鎮江府(辛巳) → 江寧府下蜀鎮(癸未) → 江寧府(乙酉) → 建康府(閏8月壬寅) → 鎮江府(甲辰) → 常州(9月己酉) → 常州無錫縣(庚戌) → 平江府(辛亥) → 臨安府(10月癸未) → 越州(壬寅) → 越州錢清堰(11月己巳) → 明州(12月己卯) → 明州定海縣(辛卯) → 明州昌國縣(癸巳) → 海中(建炎4年正月甲辰朔) → 臺州章安鎮(丙午) → 溫州港口(甲子) → 溫州(2月庚寅) → 臺州章安鎮(3月壬戌) → 臺州松門寨(乙丑) → 明州定海縣(辛未) → 明州城外(4月甲戌) → 越州餘姚縣(丙子) → 越州(癸未)¹⁴⁾

한편 金軍의 남침으로 南宋 朝廷이 궁지로 몰려있을 때 南宋의 全國 各地에서는 盜賊集團이 양산되었는데(〈表 2〉 참조) 이들 또한 곤경에 처한 南宋 朝廷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료 A·B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A : 時江北荊湖諸路盜益起, 大者至數萬人, 據有州郡, 朝廷力不能制, 盜所不能至者, 則以土豪·潰將或攝官守之, 皆羈縻而已.¹⁵⁾

B : 建炎四年, 上自海道還會稽, 時江湖荊浙皆爲金人所蹂, 而群盜連衡以州郡, 大者至十餘萬, 朝廷不能制.¹⁶⁾

이와 같이 南宋 朝廷은 建國 初期 內憂와 外患으로 궁지로 몰렸던 바, 宋朝의 中興은 이들로 실력으로 제압하고서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10만 정도의 병력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던¹⁷⁾ 南宋 朝廷의 실력으로 이들을 일시에 진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였다. 그런데 盜賊集團의 경우는 金의 남침을 방어하고 群盜를 토벌하는 데에 이용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 여기에서 변경지역에 鎮을 설치하는 문제가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즉 南宋 朝廷에서 鎮을 설치하였던 것은 그들을 무리해서 토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安居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땅을 떼어 주고서 王朝 再建에 이용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 목적이 여기에 있었음은 사료 C에

C : (范)宗尹以爲此皆烏合之衆, 急之則併死力以拒官軍, 莫若析地以處之, 盜有所歸, 則可以漸制, 乃言於曰, 「昔太祖受命, 收藩鎮之權, 天下無事, 百有五十年, 可謂良法. 然國家多難, 四方帥守事力單寡, 束手而莫知所出, 此法之弊也. 今日救弊之道, 當稍復藩鎮之法, 亦不盡行之天下, 且裂河南·江北數十州爲之, 少與之地, 而專付以權, 擇人久任, 以屏王室.」 群臣多以爲不可.

14) 盧荷生, “宋高宗建炎南遷避敵考”(下), 現代學苑(臺北 現代學苑社), 1卷6期, 1975年9月, PP.230~231.

15) 「要錄」卷33 建炎4年5月甲辰條, 「宋史全文續資治通鑑(以下 全文으로 簡稱)」卷17 高宗2 建炎4年5月甲辰條.

16) 「建炎以來朝野雜記(以下 雜記로 簡稱)」甲集 卷11 官制2 鎮撫使條.

17) 石文濟, “南宋中興四鎮”, 臺灣 文化學院歷史研究所博士論文, 1974年7月, 第5章 四鎮의 置廢 참조.

宗尹曰..「今諸郡爲盜據者以十數, 則藩鎮之勢駸駸成矣. 曷若朝廷爲之, 使恩有所歸,」上決意行之, 遂以爲相.¹⁸⁾

라고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表 2〉 群盜 興起의 路別·年度別 集計

年度 路	建炎元年 (1127)	建炎2年 (1128)	建炎3年 (1129)	建炎4年 (1130)	紹興元年 (1131)	紹興2年 (1132)	紹興3年 (1133)	紹興4年 (1134)	紹興5年 (1135)	計
河北·河東	11	1	3	0	0	0	0	0	0	15
陝西·四川	2	0	0	0	0	0	0	0	0	2
京 東	6	1	2	0	0	0	0	0	0	9
京 西	8	1	9	2	1	0	0	0	0	21
兩 淮	3	2	19	7	4	1	2	0	1	39
湖 北	1	0	1	6	3	7	0	2	1	21
兩 浙	4	1	12	1	1	0	1	0	0	20
江 東	1	0	0	2	2	1	0	0	0	6
江 西	0	0	10	5	6	4	5	1	0	31
湖 南	0	0	0	1	1	7	0	0	0	9
福 建	1	1	1	2	4	2	0	0	0	11
廣 南	0	0	0	2	3	2	2	1	2	12
計	37	7	57	28	25	24	10	4	4	196

〈表 2〉는 山内正博의 論文 “南宋鎮撫使考”(史淵 <福岡 九州大學 文學部, 1955年> 64輯 所收) P. 73에 수록된 〈諸路群盜蜂起表〉를 轉載한 것임.)

Ⅲ. 鎮의 設置實態

필자는 南宋 高宗時代 때의 諸 鎮의 設置實態를 파악하기 위해 제 사료에 散見하는 내용을 〈表 3〉으로 정리하였다.

18) 「要錄」 卷33 建炎4年5月甲辰條.

〈表 3〉 諸 鎮의 設置年月·消滅年月·鎮撫司所在地·鎮撫使의 就任年月·退任年月表

鎮名	設置年月	消滅年月	鎮撫司所在地	鎮 撫 使			史 料 根 據
				姓名	就任年月	退任年月	
河南府 孟汝唐 州鎮	炎4年 5月 ¹⁹⁾	興3年 5月		翟 興	炎4年 5月 ²⁰⁾	興2年 3月	「宋史」26·27, 「要錄」33·52, 「會編」40, 「會要」42, 「小紀」8
				翟 琮	興2年 7月	興3年 5月	
河南府 孟汝鄭 州鎮	興3年 5月	興4年 3月		翟 琮	興3年 5月	興4年 3月	「宋史」27, 「要錄」65, 「會要」42, 「小紀」16
淮寧順 昌府蔡 州鎮	炎4年 6月	炎4年10月		馮長寧	炎4年 6月	炎4年10月	「宋史」26·27, 「要錄」34·38·46·63, 「會編」40, 「會要」42, 「小紀」8, 「綱要」22
	興1年 8月	興3年 2月 以前		李 祐	興1年 8月	興3年 2月 以前	
蔡州鎮	炎4年10月 以後	興1年 8月		范 福	炎4年10月 以後	興1年 8月	「宋史」26, 「綱要」21, 「要錄」38·46, 「小紀」8
淮寧府 鎮	炎4年10月 以後	興1年 8月		李 賈	炎4年10月 以後	興1年 8月	「宋史」26, 「要錄」38·46, 「綱要」21, 「小紀」8
蔡唐州 信陽軍 鎮	興3年 2月	興4年 4月		牛 宰	興3年 2月	興4年 4月	「宋史」27, 「要錄」63·75, 「綱要」22, 「會編」59, 「小紀」14·15
襄陽府 鄧隨鄧 州鎮	炎4年 6月	興2年 6月 以前		陳求道	炎4年 6月	炎4年 8月 以前	「宋史」26·27, 「要錄」34·36·54·55·62·69, 「會編」40·44, 「會要」42, 「小紀」8·10, 「綱要」22
				桑 仲	炎4年 8月	興2年 3月	
				霍 明	興2年 5月	興2年 6月 以前	
	興3年 1月	興3年10月		李 橫	興3年 1月	興3年10月	
襄鄧州 鎮	興2年 6月	興3年 1月		李 橫	興2年 6月	興3年 1月	「宋史」27, 「要錄」55·62
鄧隨州 鎮	興2年 6月	興3年 1月		李 道	興2年 6月	興3年 1月	「宋史」27, 「要錄」55·62, 「會編」51

19) 「宋史」卷26 本紀26 高宗3 建炎4年5月乙丑條, 「要錄」卷33 建炎4年5月乙丑條, 「宋會要輯本(以下會要로 簡稱)」83冊 職官 卷42 鎮撫使 高宗 建炎4年5月24日條, 그리고 「中興小紀(以下 小紀로 簡稱)」卷8 建炎4年5月甲子條 등에는 南宋 朝廷에서 河南府孟汝唐州鎮을 설치하고 翟興을 鎮撫使로 임명한 시기가 建炎4年(1130) 5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三朝北孟會編(以下 會編으로 簡稱)」(丙) 炎興下帙 卷40 建炎4年6月11日辛巳條에는 建炎4年 6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따랐다.

20) 註19 참조.

鎮名	設置年月	消滅年月	鎮撫司所在地	鎮 撫 使			史 料 根 據
				姓名	就任年月	退任年月	
楚泗州 漣水軍鎮	炎4年 5月	?	楚州	趙 立 程 括	炎4年 5月 炎4年 9月	炎4年 9月 ?	「宋史」26·88, 「要錄」33·37, 「全文」17, 「會要」42, 「小紀」8, 「綱要」21
滁濠州 鎮	炎4年 5月	興1年 8月	滁州	劉 位 劉 綱	炎4年 5月 炎4年 6月	炎4年 6月 興1年 8月	「宋史」26·88, 「要錄」33·34·46, 「會要」42, 「小紀」8
和州無 爲軍鎮	炎4年 5月	興3年 4月		趙 霖	炎4年 5月	興3年 4月	「宋史」26, 「要錄」33·64, 「會要」42, 「小紀」8
舒蘄州 鎮	炎4年 5月 興1年 5月	炎4年 8月 興1年 8月	舒州	李 成 張 用	炎4年 5月 興1年 5月	炎4年 8月 興1年 8月	「宋史」26·88, 「要錄」33·36·44·46, 「會要」42, 「小紀」8·10
光黃州 鎮	炎4年 5月	炎4年 8月		吳 翊	炎4年 5月	炎4年 8月	「宋史」26, 「要錄」33·36·44, 「會要」42, 「小紀」8·10
舒蘄光 黃州鎮	炎4年 8月	興1年 5月		李 成	炎4年 8月	興1年 5月	「宋史」26, 「要錄」33·34
蘄黃州 鎮	興1年 8月	興2年 6月		孔彥舟	興1年 8月	興2年 6月	「宋史」26, 「要錄」46·55, 「會編」48
海州淮 陽軍鎮	炎4年 5月	?		李彥仙 李進彥	炎4年 5月 興1年 6月 以前	炎4年 9月 ?	「宋史」26, 「要錄」33, 「會要」42, 「小紀」8
承州天 長軍鎮	炎4年 5月	?	承州	薛 慶 王 林	炎4年 5月 炎4年 9月	炎4年 8月 ?	「宋史」26·88, 「要錄」33·36·37, 「會要」42, 「小紀」8, 「全文」17
眞揚州 鎮	炎4年 6月	?	揚州	郭仲威 史康民	炎4年 6月 興1年 4月	興1年 4月 ?	「宋史」26·88, 「要錄」34, 「會編」40·46, 「綱要」21, 「小紀」10
通泰州 鎮	炎4年 7月	興1年 7月	泰州	岳 飛	炎4年 7月	興1年 7月	「宋史」26·88, 「要錄」35·46, 「全文」17, 「會編」41, 「小紀」8
廬壽州 鎮	炎4年11月 以前	興3年 2月		李 伸 王 亨 郭 偉 胡舜陟	炎4年11月 以前 興2年 2月 ²¹⁾ 興2年12月 興2年12月	炎4年11月 興2年11月 興2年12月 興3年 2月	「宋史」27, 「要錄」39·51·61·63, 「會編」46, 54

21) 王亨이 廬壽州鎮의 長官에 임명된 시기와 그의 직함에 대한 「要錄」과 「會編」의 기재 내용은 서로 다르다. 즉 「要錄」(卷51)에는 紹興2年(1132) 2月丙戌日에 그를 廬壽州鎮의 權主管鎮撫司公事로 임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會編」(丙) 炎興下帙 卷46에는 紹興元年(1131) 4月20日에 鎮撫使로 임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따랐다.

鎮名	設置年月	消滅年月	鎮撫司所在地	鎮 撫 使			史 料 根 據
				姓名	就任年月	退任年月	
德安府 復州漢陽軍鎮	炎4年 6月	興3年 4月	復州	陳 規	炎4年 6月	興3年 4月	「宋史」26·88, 「要錄」34·64, 「會編」39, 「會要」42, 「小紀」8
荊南府 歸峽州 荊門公安軍鎮	炎4年 6月	興5年 3月	荊南府	解 潛	炎4年 6月	興5年 3月	「宋史」26·88, 「要錄」34, 「會要」42, 「小紀」8·18
鼎澧州 鎮	炎4年 6月	炎4年10月	鼎州	程昌禹	炎4年 6月	炎4年10月	「宋史」26·88 「要錄」34·38, 「會編」40, 「會要」42, 「小紀」8
辰沅靖州鎮	炎4年 7月	炎4年10月		孔彥州	炎4年 7月	炎4年10月	「宋史」26, 「要錄」35·38
鼎澧辰沅靖州鎮	炎4年10月	炎4年11月		孔彥州	炎4年10月	炎4年11月	「宋史」26, 「要錄」38·39
金均房州鎮	炎4年 6月	興5年 4月	金州	范之才	炎4年 6月	炎4年11月以前	「宋史」26·27·89, 「要錄」34·39, 「會編」40·43·68, 「會要」42, 「小紀」8
				王 彥	炎4年11月	興5年 4月	
商鞏陝州鎮	興3年 4月	興4年 4月		董 震	興3年 4月	興3年 5月	「宋史」27, 「要錄」64·75
				董 先	興3年 5月	興4年 4月	「會要」42

(「炎」은 「建炎」을 의미하고 「興」은 「紹興」을 의미함. 「綱要」는 「皇宋十朝綱要」의簡稱임. 王亨·郭偉·王林은 主管鎮撫司公事임. 「會要」의 卷數는 83冊 職官의 卷數이고, 「會編」의 卷數는 炎興下陝의 卷數임.)

南宋 高宗時代에는 변경지역에 28鎮이 설치되었다. <表 3>에 의거해 그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諸 鎮의 設置地域

鎮이 설치된 지역은 <表 4>에 나타난 7路의 7府·36州·9軍이다. 이는 京畿路·荊湖北路·淮南東路·淮南西路·京東東路·京東西路·京西北路·京西南路의 모든 府·州·軍에 鎮을 설치하려던 당초의 계획²²⁾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2) 「會要」 83冊 職官42 鎮撫使 高宗 建炎4年5月22日條: 宰臣范宗尹等言..「……欲將京畿湖北淮南京東京西州軍並分爲鎮, 其陝西四川江南兩浙湖南福建二廣路並仍舊制……」從之.

〈表 4〉 諸 鎮의 設置地域

路 分	府 · 州 · 軍 名
荊湖北路	荊南府·德安府·復州·鼎州·澧州·峽州·歸州·辰州·沅州·靖州·荊門軍·漢陽軍·公安軍
淮南東路	揚州·楚州·海州·泰州·泗州·滁州·眞州·通州·高郵軍·漣水軍·天長軍
淮南西路	壽春府·廬州·蘄州·和州·舒州·濠州·光州·黃州·無爲軍
京東東路	淮陽軍
京西南路	襄陽府·鄧州·隨州·金州·房州·均州·郢州·唐州
京西北路	河南府·淮寧府·順昌府·鄭州·孟州·蔡州·汝州·信陽軍
永興軍路	虢州·陝州

(2) 諸 鎮의 設置時期

建炎4年(1130)에 22鎮(78.6%), 紹興元年(1131)에 1鎮(3.5%), 紹興2年(1132)에 2鎮(7.1%) 그리고 紹興3年(1133)에 3鎮(10.7%)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諸 鎮의 설치는 建炎4年(1130)에 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3) 諸 鎮의 消滅時期

建炎4年(1130)에 4鎮(14.3%), 紹興元年(1131)에 6鎮(21.4%), 紹興2年(1132)에 1鎮(3.5%), 紹興3年(1133)에 8鎮(28.6%), 紹興4年(1134)에 3鎮(10.7%), 그리고 紹興5年(1135)에 2鎮(7.1%)이 消滅되었고, 4鎮(14.3%)은 消滅時期가 불분명하다.

(4) 諸 鎮의 存續期間

존속기간이 1年 미만인 것이 12鎮(42.8%), 1年 이상 2年 미만인 것이 5鎮(17.8%), 2年 이상 3年 미만인 것이 3鎮(10.7%), 3年 이상 4年 미만인 것이 2鎮(7.1%), 4年 이상 5年 미만인 것이 2鎮(7.1%), 불분명한 것이 4鎮(14.3%)으로 諸 鎮의 평균 存續期間은 약 1년 7개월이다.

(5) 1鎮의 管轄範圍

관할구역이 1府·州·軍이던 것이 2鎮(7.1%), 2府·州·軍이던 것이 13鎮(46.4%), 3府·州·軍이던 것이 7鎮(25%), 4府·州·軍이던 것이 4鎮(14.3%), 5府·州·軍이던 것이 2鎮(7.1%)으로 1鎮의 평균 管轄範圍는 약 2.7府·州·軍이었다.

(6) 鎮撫使의 承襲關係

2代 이상 승습한 鎮은 12鎮(2代: 10鎮, 4代: 2鎮)에 불과하고 절반을 넘는 16鎮은 단대에 廢鎮되었다. 특히 世襲한 경우는 2鎮에 불과하다.

IV. 諸 鎮의 消滅

諸 鎮의 消滅實態를 보면 南宋 朝廷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紹興5年(1135) 당시까지 잔존한 鎮은 金均房州鎮과 荊南府復州漢陽軍鎮 등 2鎮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전에 모두 소멸되었다(〈表 5〉 참조). 이는 南宋 朝廷에서 그것을 존속시켜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自滅하더라도 방임하거나 직접 廢鎮을 단행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면 南宋 朝廷으로 하여금 諸 鎮을 존속시켜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요인은 무엇이이었을까?

첫째, 諸 鎮은 본래 唐末과 五代 때 정국을 혼란케 한 藩鎮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²³⁾ 그런 위에 諸 鎮의 鎮撫使로 임명된 자들은 또 사료 D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야망을 가진 無賴者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朝廷에의 충성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제거할 필요성은 있을지언정 육성할 필요성은 없는 문제성을 지닌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D: 諸路鎮撫使桑仲·李成·孔彥舟·薛慶皆起於群盜, 翟興·劉位皆土豪, 李彥先, 郭仲威皆濮將, 吳翊·趙霖·馮馬寧皆攝官, 朝廷及大臣出使所除, 惟趙立·陳規·解潛·岳飛·范之才而已.²⁴⁾

둘째, 諸 鎮의 鎮撫使로 임명된 자 가운데 南宋 朝廷의 명령에 순응하면서 金軍의 침입을 방어하고 도적을 토벌하는 데에 큰 공로를 세워 宋朝 재건에 기여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사료 E의 지적 처럼 그 자질이 低劣하여 宋朝 재건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모반하고 창부리를 南宋 朝廷으로 거는 襄陽府鄧隨郢州鎮撫使 桑仲²⁵⁾, 舒蕪光黃州鎮撫使 李成²⁶⁾, 蕪黃州鎮撫使 孔彥舟²⁷⁾, 眞揚州鎮撫使 郭仲威²⁸⁾, 廬壽州鎮撫使 李伸²⁹⁾, 劉豫의 齊에 투항하여 그들의 傀儡 노릇을 한 淮寧順昌府蔡州鎮撫使 馮長寧³⁰⁾, 그리고 城을 버리고 도주한 蔡州鎮撫使 范福³¹⁾과 光黃州鎮撫使 吳翊³²⁾ 등과 같이 有害無益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南宋 朝廷이 鎮의 존재를 경시한 요인은 鎮撫使들의 저열한 자질

23) 諸 鎮이 唐과 五代 때의 藩鎮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은 「要錄」卷37 建炎4年9月甲辰條와 「會要」83冊 職官42 鎮撫使 建炎4年9月9日條에 실려있는 「上曰..「朝廷始行藩鎮, 當令遵稟號令, 當室之衰, 不以他事, 祇是藩鎮跋扈爾.」……乃詔 「……自今諸鎮撫使毋得擅離本鎮.」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4) 「要錄」卷33 建炎4年5月甲辰條의 註.

25) 「宋史」卷26 本紀26 高宗3 建炎4年9月乙卯條, 「要錄」卷44 紹興元年5月丁酉條.

26) 「宋史」卷26 本紀26 高宗3 建炎4年9月丁巳條, 「要錄」卷37 建炎4年9月丁巳條.

27) 「要錄」卷55 紹興2年6月壬寅條.

28) 「宋史」卷26 本紀26 高宗3 建炎4年6月乙未條, 「綱要」卷21 高宗 紹興元年5月辛亥條.

29) 「要錄」卷39 建炎4年11月戊午條.

30) 「宋史」卷26 本紀26 高宗3 建炎4年10月己亥條, 「要錄」卷38 建炎4年10月己亥條.

31) 「宋史」卷26 本紀26 高宗3 紹興元年8月庚寅條.

32) 「要錄」卷36 建炎4年 8月丙戌條.

내지는 南宋 朝廷에의 불손한 태도였다고 여겨진다.

E: 是論者以爲鎮撫兵皆烏合之徒, 其帥守與夫僚屬, 率多肆貪殘之威, 無子惠之德, 故民之復業者少, 宜稍選沿江諸郡長民之官, 責以勞徠勸相之任. 於是淮東已復置帥臣.³³⁾

셋째, 紹興元年(1131) 이후 金軍의 東南方面으로의 침공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群盜의 창궐 또한 <表 2>와 <表 5>에서 보듯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변화도 한 요인이었다고 여겨지니 그것은 鎮의 설치가 본래 金의 남침을 방어하고 群盜를 토벌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表 5> 群盜 招定の 路別·年度別 集計

年度 路	建炎元年 (1127)	建炎2年 (1128)	建炎3年 (1129)	建炎4年 (1130)	紹興元年 (1131)	紹興2年 (1132)	紹興3年 (1133)	紹興4年 (1134)	紹興5年 (1135)	計
京東	1	0	2	0	0	0	0	0	0	3
京西	4	0	7	2	4	1	0	0	0	18
淮東	0	1	3	1	11	0	0	0	0	16
淮西	2	1	6	3	5	3	1	0	1	22
湖北	1	0	1	1	2	3	0	2	8	18
兩浙	2	2	6	4	1	0	1	0	0	16
江東	0	0	3	3	5	2	0	0	0	13
江西	0	0	0	4	3	11	3	2	1	24
湖南	0	0	0	1	1	11	1	1	0	15
<建>	0	2	0	0	3	4	0	0	0	9
廣東	0	0	0	1	1	4	0	1	2	9
計	10	6	28	20	36	39	6	6	12	163

(<表 5>는 山内正博의 論文 "南宋鎮撫使考" P. 81. 에 수록된 <群盜招定表>를 轉載한 것임.)

넷째, 南宋 朝廷에서는 金과의 접경지역에 諸 鎮을 열치함과 동시에 浙西·建康·江州·鄂州 등의 지역에 安撫大使 혹은 安撫使를 배치하여 연변의 鎮撫使를 감시하는 한편 그 지역의 群盜를 소탕토록 하였다. 그러나 주로 文臣을 安撫大使나 安撫使로 임명한 까닭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자 紹興元年(1131)부터 武官出身인 劉光世·張俊·韓世忠·岳飛 등 4人을 宣撫使로 임명하여 群盜의 토벌을 전담토록 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설치되게 된 宣撫使들은 群盜의 토벌에 공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群盜를 토벌하는 동안 招安의 방법을 통해 상당수의 병력을 확

33) 上掲書 卷63 紹興3年 2月庚戌條.

보하였는데(〈表 6〉 참조) 이 또한 南宋 朝廷으로 하여금 鎮을 존속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요인이었다고 여겨진다.

〈表 6〉 宣撫使軍의 兵力增加 實態

年度 軍 別	建 炎 4 年 (1130)	紹 興 2 年 (1132)	紹 興 4 年 (1134)	紹 興 5 年 (1135)	紹 興 7 年 (1137)
張 俊 軍	(10,000)	30,000	40,000	(50,000)	50,000 以上
韓 世 忠 軍	(15,000)	40,000		55,000	50,000 以上
劉 光 世 軍	(15,000)	40,000	106,000	(50,000)	
岳 飛 軍	(2,000)	23,000		(50,000)	50,000 以上
計	(42,000)	133,000	146,000	(205,000)	?

()속의 수치는 추정 수치임. 〈表 6〉은 日野開三郎·山内正博의 論文 “南宋軍閥の成立”(歷史教育〈東京 日本書院, 1954年〉2卷 7號 所收) P. 19에 수록된 〈武將兵力增加表〉에 의거해 작성되었음.

다섯째, 南宋의 兵力은 기술한 바와 같이 建炎4年(1130) 무렵까지 10萬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宣撫使軍을 포함하는 諸 軍이 크게 증원됨으로 해서 그 2·3年 후인 紹興2·3年(1132·1133) 경에는 사료 F와 G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建炎4年 數의 배로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여겨진다.

F: 紹興二年十月, 尚書右僕射朱勝非以爲國家屯軍二十萬, 月費二百萬緡, 常不務變通, 必致坐困. 於是建議將大軍分爲三軍, 聲言取徐·邳, 而實取淮陽, 聲言取京師, 而實取陳·蔡, 聲言入濱海, 而實取高密.³⁴⁾

G: 紹興三年九月庚午, 上曰:「今有兵僅二十萬, 當更精擇, 得勝兵二十萬, 器械悉備, 訓而行之, 可以復中原威外國.」³⁵⁾

V. 鎮撫使의 權限과 屬官

1. 權限

南宋에서는 鎮帥를 鎮撫使로 호칭하였는데 이 職에 임명된 자 가운데에는 출신이 비천한 자도 많았다.(〈表 7〉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宋 朝廷에서는 그들에게 3品服을 하사하는³⁶⁾

34) 上揭書 卷59 紹興2年10月條.

35) 上揭書 卷68 紹興3年 9月庚午條.

36) 趙霖·吳翺·陳規·程昌高·陳求道·范之才·馮馬寧 등이 鎮撫使로 임용되면서 南宋 朝廷으로부터 3品服을 하사받았다(「要錄」卷33 建炎4年5月乙丑條, 同書 卷34 建炎4年6月庚辰條, 「宋史」卷377 列傳136 陳規條).

등의 우대와 소정의 上供을 제외한 鎮 內의 모든 수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財政權과 馬步軍都總管을 겸하면서³⁷⁾ 軍을 편의에 따라 출동시킬 수 있는 兵權을 부여하였고, 더 나아가 문제가 없을 경우로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職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世襲權까지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要錄」卷33 建炎4年5月甲子條에 실려 있는³⁸⁾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先是范宗尹等言..「……除茶鹽之利，國家所繫，合歸朝廷置官提舉外，他監司竝罷，上供財賦權免三年，餘令帥臣移用，……遇軍興，聽從便宜，其帥臣不因朝廷召擢，更不除代，如能捍禦外寇，顯立大功，當議特許世襲。」始宗尹等議即令世襲，上曰..「未須爾。」轉臣奏..「江北殘破，若不許世襲，恐不能死守。」上曰..「便令世襲，恐太重，俟其保守無虞，然後許之。」宗尹曰..「當如聖訓，臣等慮所不及。」

한편 鎮撫使에게는 建炎4年(1130) 6月, 德安府復州漢陽軍鎮撫使 陳規가 그의 部將 祖適을 知復州로 임명하였던 사실이라던가 紹興元年(1131) 3月, 襄陽府鄧隨郢州鎮撫使 桑仲이 그의 將 李道를 知隨州로 임명하였던³⁹⁾ 사실, 그리고 紹興2年(1132) 正月, 滁濠州鎮撫使 劉綱이 張格非를 知滁州로 임명하였던⁴⁰⁾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屬官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人事權도 주어졌다.

〈表 7〉 鎮撫使의 前歷別 分類

前歷	鎮撫使姓名	史料根據
盜賊	孔彥舟·桑仲·薛慶·李成·李伸·史康民	「要錄」33·39, 「雜記」(甲)11, 「宋史」453
官吏	范之才·程昌寓·趙立·陳求道·陳規·解潛·胡舜陟·霍明·郭偉·范福	「要錄」25·33·42, 「會編」40, 「宋史」378·448
潰將	郭仲威·李彥仙·王林·張用	「要錄」33·35
攝官	吳翊·趙霖·馮長寧	「要錄」33
軍官	岳飛·牛皋·李道·王亨·李寶·李進彥·李橫·程括	「宋史」365·368·465, 「要錄」19·37·39·43
土豪	劉位·劉綱·李祐·霍興·霍琮·王彥	「要錄」8·19·33, 「宋史」26
降官	董先·董震	「宋史」27

(王亨·郭偉·王林은 主管鎮撫司公事임.)

37) 「會要」83冊 職官42 鎮撫使 高宗 建炎4年5月24日條:三省言..京畿等路州軍既分爲鎮撫使, 其逐路安撫使欲竝罷却, 令鎮撫使帶馬步軍都總管, ……」從之.

38) 「會要」83冊 職官42 鎮撫使 高宗 建炎4年5月22日條, 「小紀」卷8 建炎4年5月甲子條, 「會編」(丙) 炎興下帙 卷40 建炎4年6月11日辛巳條, 「雜記」甲集 卷11 官制2 鎮撫使條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39) 「要錄」卷34 建炎4年6月庚辰條.

40) 上揭書 卷43 紹興元年3月條.

이와 같이 鎮撫使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鎮撫使의 이와 같은 큰 권한은 唐과 五代 때 藩鎮에 주어졌던 권한에 필적하는 것이었으니 鎮을 설치할 때 南宋의 高宗이 내린 詔書의 내용 중에 「周建侯邦, 四國有藩垣之助, 唐分藩鎮, 北邊無夷狄之虞.」라는 내용이 있는⁴¹⁾ 점으로 미루어 南宋의 수뇌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屬官

鎮撫使의 아래에는 副鎮帥인 鎮撫副使⁴²⁾와 다음과 같은 屬官이 있었다.

(1) 參謀官

鎮撫司의 軍政事務를 담당하였다.

- ① 參謀官：人員 未詳. 襄陽府鄧隨郢州鎮撫司와 金房州鎮撫司 등에 이 官職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⁴³⁾
- ② 參謀官：人員 1人⁴⁴⁾. 鎮揚州鎮撫司와 楚泗州漣水軍鎮撫司 등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⁵⁾
- ③ 司理參軍：人員 未詳. 眞揚州鎮撫司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⁶⁾

(2) 文書官

鎮撫司의 文書 作成, 文書 連絡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 ① 書寫機宜文字：人員 1人.⁴⁷⁾ 襄陽府鄧隨郢州鎮撫司와 金房州鎮撫司 등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⁸⁾
- ② 主管機宜文字：人員 1人.⁴⁹⁾ 襄陽府鄧隨郢州鎮撫司와 荊南府歸峽州荊門公安軍鎮撫司 등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⁵⁰⁾

41) 上揭書 卷33 建炎4年5月甲子條.

42) 鎮撫司의 編制 속에 鎮撫副使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사례로는 紹興元年(1131) 2月 무렵, 霍明을 襄陽府鄧隨郢州鎮撫司의 鎮撫副使로 임명하였고(「要錄」 卷42 紹興元年2月癸酉條의 註 참조) 紹興3年(1133) 5月, 董先을 河南府孟汝鄭州鎮撫司의 鎮撫副使로 임명하였던(「宋史」 卷27 本紀 27 高宗4 紹興3年5月丙辰條) 것을 들 수 있다.

43) 「要錄」 卷52 紹興2年3月戊戌條, 同書 卷63 紹興3年2月甲寅條, 「小紀」 卷10 紹興元年2月癸巳條.

44) 「會要」 83冊 職官42 鎮撫使 高宗 建炎4年5月24日條：三省言：「……鎮撫使司官屬欲令置參議官一員·書寫機宜文字一員·幹辦公事二員, 竝聽奏辟鎮撫使除授竝命詞給告。」從之.

45) 「要錄」 卷34 建炎4年6月丙戌條 同書 卷37, 建炎4年9月丙辰條.

46) 上揭書 卷34 建炎4年6月丙戌條.

47) 宋史」 卷167 志120 職官7 鎮撫使條：屬官有參議官·書寫機宜文字各一員, 幹辦公事二員, 竝聽奏辟.

48) 「要錄」 卷51 紹興2年2月丁丑條, 同書 卷52 紹興2年3月庚申條, 同書 卷75 紹興4年4月壬寅條.

49) 「會要」 83冊 職官42 鎮撫使 高宗 紹興元年3月7日條：荊南府歸峽州荊門公安軍鎮撫使兼知荊南府解潛言：「乞權增置主管機宜文字一員·幹辦公事二員及添置準備將領·準備差遣·準備差使各一十員·準備使喚二十員, 內聽候差使仍乞不限員數, 竝許踏逐(逐)選官辟置候將來事宜寧日罷。」竝從之.

50) 「要錄」 卷55 紹興2年6月辛丑條, 同書 卷87 紹興5年3月壬午條.

(3) 雜務官

鎮撫司의 雜務를 처리하였다.

- ① 幹辦公事：人員 2人.⁵¹⁾ 金房州鎮撫司·商虢陝州鎮撫司·安復州鎮撫司·河南府孟汝鄭州鎮撫司 등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⁵²⁾
- ② 准備差遣：人員 10人.⁵³⁾
- ③ 准備差使：人員 10人.⁵⁴⁾
- ④ 准備使喚：人員 20人.⁵⁵⁾

(4) 營田官

鎮撫司의 營田事務를 담당하였다.

- ① 營田使：人員 1人. 鎮撫使가 겸하였다.⁵⁶⁾
- ② 營田官：人員 未詳. 荊南府歸峽州荊門公安軍鎮撫司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⁵⁷⁾
- ③ 副營田官：人員 未詳. 荊南府歸峽州荊門公安軍鎮撫司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⁵⁸⁾

(5) 將領

鎮撫司軍을 통솔하였다.

- ① 都統制：鎮撫司軍에서는 全軍을 5軍으로 나누고⁵⁹⁾ 各軍을 다시 몇 개의 部로 나누는 편제를 사용하였는데⁶⁰⁾ 都統制의 직무는 全軍의 統轄이었다. 都統制의 人員은 未詳. 襄鄆隨郢州鎮撫司와 河南府孟汝唐州鎮撫司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¹⁾

51) 註49 참조.

52) 「要錄」卷47 紹興元年9月壬寅條, 同書 卷51 紹興2年2月丁丑條, 同書 卷64 紹興3年4月丁亥條, 同書 卷64 紹興3年4月庚寅條, 同書 卷65 紹興3年5月丙辰條, 同書 卷75 紹興4年4月條, 「會編」(丙) 炎興下帙 卷48 紹興元年9月28日辛酉條.

53) 註49 참조.

54) 註49 참조.

55) 註49 참조.

56) 「綱要」卷22 高宗 壬子紹興2年2月癸丑條.

57) 「宋史」卷26 本紀26 高宗3 紹興元年5月戊戌條, 「要錄」卷44 紹興元年5月辛酉條.

58) 註57 참조.

59) 鎮撫司軍이 全軍을 前·後·左·右·中 5軍으로 나누었던 사실은 通泰州鎮撫司에 前軍이 있었고(「要錄」卷38 建炎4年10月己亥條), 襄鄆隨郢州鎮撫司에 後軍이 있었으며(「要錄」卷53 紹興2年4月己未條), 滌濠州鎮撫司에 左軍과 中軍이 있었던(「要錄」卷44 紹興元年5月癸亥條)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60) 河南府孟汝唐州鎮撫司軍과 德安府復州漢陽軍鎮撫司軍에서 各軍을 部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다(「宋史」卷27 本紀27 高宗4 紹興2年3月癸丑條, 「要錄」卷34 建炎4年6月庚辰條)

61) 「要錄」卷42 紹興元年2月癸酉條, 同書 卷43 紹興元年4月條, 同書 卷60 紹興2年11月乙丑條.

- ② 同都統制：人員과 職務는 未詳. 金房州鎮撫司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²⁾
- ③ 副都統制：人員과 職務는 未詳. 襄陽府鄧隨郢州鎮撫司와 舒蕪光黃州鎮撫司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³⁾
- ④ 同副都統制：人員과 職務는 未詳. 襄陽府鄧隨郢州鎮撫司에 이 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⁴⁾
- ⑤ 統制：人員 未詳. 軍級の 統兵官이었다. 荊南府歸峽州荊門公安軍鎮撫司·金均房州鎮撫司·通泰州鎮撫司 등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⁵⁾
- ⑥ 統領：人員 未詳. 統制를 보좌하였다. 荊南府歸峽州荊門公安軍鎮撫司·河南府孟汝唐州鎮撫司·通泰州鎮撫使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⁶⁾
- ⑦ 部將：人員 未詳. 部級の 統兵官이었다. 河南府孟汝唐州鎮撫司와 德安府復州漢陽軍鎮撫司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⁷⁾
- ⑧ 裨將：人員과 職務는 未詳. 河南府孟汝唐州鎮撫司에 이 관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⁸⁾

VI. 結 論

지금까지 范宗尹의 발의로 南宋 高宗時代 때, 변경지역에 설치되었던 鎮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南宋은 建國 初期 高宗을 옹징한 뒤 宋의 영토에 傀儡政權을 세우겠다는 목표하에 자행된 金軍의 지속적인 남침을 받는 외에 각지에서 양산된 盜賊集團으로부터도 도전을 받았다. 따라서 宋朝의 中興은 이들을 실력으로 제압하고서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10만 정도의 兵力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南宋 朝廷의 실력으로 이들을 일시에 진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였다. 그런데 盜賊集團의 경우는 金의 남침을 방어하고 群盜를 토벌하는 데에 이용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 여기에서 변경지역에 鎮을 설치하는 문제가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즉 南宋 朝廷에서 鎮을 설치하였던 것은 群盜를 무

62) 上揭書 卷62 紹興3年正月乙丑條.

63) 「宋史」 卷27 本紀27 高宗4 紹興2年閏4月條, 「要錄」 卷41 紹興元年正月癸卯條, 同書 卷43 紹興元年4月癸未條.

64) 「宋史」 卷27 本紀27 高宗4 紹興2年閏4月條.

65) 「宋史」 卷27 本紀27 高宗4 紹興4年2月己丑條, 同書 同卷 紹興4年5月丙寅條, 「要錄」 卷38 建炎4年10月己亥條.

66) 「宋史」 卷27 本紀27 高宗4 紹興4年2月丙戌條, 「要錄」 卷36 建炎4年8月戊戌條, 同書 卷45 紹興元年6月壬午條.

67) 「宋史」 卷27 本紀27 高宗4 紹興2年3月癸丑條, 「要錄」 卷34 建炎4年6月庚辰條.

68) 「要錄」 卷36 建炎4年8月戊戌條.

리해서 토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정 면적의 땅을 떼어주고서 王朝 再建에 이용한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2) 南宋 朝廷에서는 建炎4年(1130)5월부터 紹興3年(1133)4月 사이에 金과의 접경지역인 7路의 7府·36州·9軍(荊湖北路의 2府·8州·3軍, 淮南東路의 8州·3軍, 淮南西路의 1府·7州·1軍, 京東東路의 1軍, 京西南路의 1府·7州, 京西北路의 3府·4州·1軍, 永興軍路의 2州)에 28鎮을 설치하였는데 그것들은 建炎4年부터 自滅하거나 朝廷에 의해 廢鎮되어 오다가 紹興5年(1135)4月 金均房州鎮이 廢鎮된 것을 끝으로 모두 소멸되었다. 諸 鎮의 평균 存續期間은 1년7개월이고, 1鎮의 평균 管轄範圍는 2.7府·州·軍이며 鎮帥가 2代 이상 승습한 鎮은 12鎮에 불과하였다.

(3) 諸 鎮이 설치된지 불과 5년여만에 모두 소멸된 이유는 南宋 朝廷에서 그것을 존속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自滅하더라도 방임하거나 직접 廢鎮을 단행한 데에 연유하였다. 南宋 朝廷으로 하여금 諸 鎮을 존속시켜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요인은 ① 諸 鎮의 鎮撫使로 임명된 자들의 대부분이 본래 야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제거할 필요성은 있을지언정 육성할 필요성은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점, ② 鎮撫使로 임명된 자 대다수가 자질이 저열하여 宋朝의 재건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반하고 창부리를 南宋 朝廷으로 들이대거나 劉豫의 齊에 투항하여 그들의 압압이 노릇을 하는 자 또한 상당수에 달했다는 점, ③ 紹興元年 이후 金軍의 東南方面으로의 직접 침공이 중단되고 群盜의 창궐 또한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 ④ 본래 群盜를 토평할 목적에서 설치한 宣撫使들이 群盜를 토평하는 동안 招安의 방법을 통해 상당수의 병력을 확보하였고 기타의 兵力 또한 이 시기에 크게 증원되어 남송조정에서 이들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능히 金軍의 침입을 방어하고 群盜를 토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이었다.

(4) 鎮撫使에게는 소정의 上供을 제외한 鎮 內의 모든 수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財政權, 軍을 편의에 따라 출동시킬 수 있는 兵權, 屬官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人事權이 부여되었고 심지어는 職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世襲權까지 부여되었다.

(5) 鎮撫使의 아래에는 副鎮帥인 鎮撫副使와 參謀官·參議官·司理參軍 등의 參謀官, 書寫機宜文字·主管機宜文字 등의 文書官, 幹辦公事·准備差遣·准備差使·准備使喚 등의 雜務官, 營田使, 營田官, 副營田官 등의 營田官, 그리고 都統制·同都統制·副都統制·同副都統制·統制·統鎮·部將·裨將 등의 將領이 있어 그를 보좌하였다.

參 考 文 獻

- 脫脫,「宋史」,臺北 新文豐出版公司 影印本。
- 脫脫,「金史」,臺北 新文豐出版公司 影印本。
- 楊家駱,「續資治通鑑長編」,臺北 世界書局 影印本。
- 王應麟,「玉海」,臺北 大化書局 影印本。
- 李心傳,「建炎以來繫年要錄」,臺北 文海出版社 影印本。
- 撰者不明,「宋史全文續資治通鑑」,臺北 文海出版社 影印本。
- 李心傳,「建炎以來朝野雜記」,臺北 文海出版社 影印本。
- 楊家駱,「宋會要輯本」,臺北 世界書局 影印本。
- 熊克,「中興小紀」,臺北 文海出版社 影印本。
- 徐夢莘,「三朝北孟會編」,臺北 大化書局 影印本。
- 李燾,「皇宋十朝綱要」,臺北 文海出版社 影印本。
- 畢沅,「續資治通鑑」,臺北 宏業書局 影印本。
- 馮琦,「宋史紀事本末」,臺北 華世出版社 影印本。
- 黃寬重,「南宋時代抗金的義軍」,臺北 聯經出版社,1988年10月。
- 寺地遵,「南宋初期政治史研究」,廣島 溪水社,1988年2月。
- 方豪,「宋史」,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1979年10月。
- 張峻榮,「南宋高宗偏安江左原因之探討」,臺北 文史哲出版社,1985年3月。
- 罷球慶,“北宋兵制研究”,新亞學報(香港 新亞書院研究所),3期1卷,1957年8月。
- 蔣復璁,“宋代一個國策的檢討”,大陸雜誌(臺北 大陸雜誌社),9卷7期,1954年10月。
- 趙麗生,“靖康·建炎間各種民間武裝勢力性質的分析”,寄隴居論文集(山東 齊魯書社),1981年7月。
- 遲景德,“宋高宗與金講和如末”,歷史學報(臺灣國立政治大),1期 1983年3月。
- 盧荷生,“宋高宗建炎南遷避敵考”(下),現代學苑(臺北 現代學苑社),1卷6期,1975年9月。
- 石文濟,“南宋中興四續”,臺灣 文化學院歷史研究所博士論文,1974年7月。
- 王德毅,“略論宋代國計上的重大難題”,宋史研究論文集(臺北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2輯,1965年4月。
- 林瑞翰,“紹興十二年前南宋國政之研究”,宋史研究論文集(臺北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3輯,1966年4月。
- 尚重濂,“兩宋之際民衆抗敵史研究”,新亞學報(香港 新亞書院研究所),5卷2期,1963年。
- 徐秉愉,“由苗·劉之變看南宋初期的軍權”,食貨(臺北 食貨月刊社),16卷11·12期,1988年3月。

- 黃寬重, “略論南宋時代的歸正人”, 宋史研究論文集(臺北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14輯, 1983年7月.
- 黃寬重, “南宋初期抗金義軍的組織與性質”, 中國社會經濟史研討會論文集(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83年7月.
- 方豪, “宋代之軍隊”, 民主評論(香港 民主評論社), 1期, 1949年6月.
- 山内正博, “南宋鎮撫使考”, 史淵(福岡 九州大學文學部), 64輯, 1955年.
- 安蘇幹夫, “南宋初期四大武將の財政に関する研究”, 經濟研究論集(廣島 經濟大), 2卷4號, 1980年.
- 内河久平, “南宋總領所考”, 史潮(東京 教育大學文學部 大塚史學會), 78・79合併號, 1962年.
- 山内正博, “南宋建國期の武將勢力に就いての一考察”, 東洋學報(東京 東洋文庫 東洋學術協會), 38卷 3號, 1955年.
- 日野開三郎・山内正博, “南宋軍閥の成立”, 歷史教育(東京 日本書院 歷史教育研究會), 2卷 7號, 1954年.
- 寺地遵, “南宋成立期における民間武装組織と建炎年間の政治過程”, 史學研究(廣島 廣島史學研究會), 137號, 1977年.

Summary

A study on Chêns (鎮) during the period of king
Kaotsung (高宗) in Southern Sung Dunasty

Yong-Wan Kim

There were lots of large thief troops, which appeared in every parts of the whole country at the beginning of Southern Sung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of Southern Sung Dunasty, therefore, established many Chêns (鎮) in the frontier. The main reason to establish Chêns (鎮) was not to subdue them but to get their support by lending them some territories in order to reinforce the ruling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of Southern Sung Dunasty had established 28 Chêns (鎮) in 52 prefectures (7府·36州·9軍) of 7 province from May of the fourth year of Chienyen (建炎, 1130) to April of the third year of Shaohsing (紹興), which lasted up to April of the fifth year of Shaohsing (紹興, 1133). The average lasting period of each Chên (鎮) was one year and seven months and the average occupying area of each Chên (鎮) was 2.7 prefecture (府·州·軍). There were only 12 Chêns (鎮) whose ruling power transmitted more than two generations.

All the Chêns (鎮) of Southern Sung Dunasty were ceased to exist as a matter of course within 5 years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let them disappear naturally or destroy by compelling force.

Chênfushih (鎮撫使) had the right of public finance, the right of army commandership, the right of personel management and the right of transmitting his ruling power to his next generation.

Under the position of Chênfushih (鎮撫使), there were staff officers; Chênfufushih (鎮撫副使), Ts'anikuan (參議官), Ssulits'anchün (司理參軍) etc. and the archives and documents bureaucrat; Shuhsiehchiiwêntzū (書寫機宜文字), Chukuanchiiwêntzū (主管機宜文字) etc. and odd business bureaucrat; kanpankungshih (幹辦公事), Chunpeich'ach'ien (準備差遣), Chunpeishihhuan (準備使喚) etc. and Yingt'ienkuan (營田官); Yingt'ienshih (營田使), Yingt'ienkuan (營田官), Fuyingt'ienkuan (副營田官) etc. and generals; Tut'ungchih (都統制), T'ungtut'ungchih (同都統制), Futut'ungchih (副都統制), T'ungfutut'ungchih (同副都統制), T'ungchih (統制), T'ungling (統領), Puchiang (部將), Pichiang (裨將) etc.